

## 정 책 과 제 도

# 임금채권 보장제도

강승복\*

##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중 일정범위의 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직후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 임금 등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됨.
- 근로기준법(제37조)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시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1998.2.20)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1998.7.1).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 **채당금의 지급요건** : 채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지급

채당금(替當金)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 기업의 도산은 법원의 재판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으로 분류
- 재판상 도산이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화의법·회사정리법에 의한 직권파산선고(법원이 결정)등이 포함됨.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퇴직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 사실상 도산 상태 : 당해 사업주가 ①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② 사업재개의 가능성도 없으며, ③채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사업주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동일)으로서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도산한 사업주를 말함.
  - ※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2001.7.1부터 적용)
  - 임금채권보장제도하에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함.

◆ **채당금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채불액

- 휴업수당은 2001.1.1 이후 기업이 도산한 경우부터 지급보장함.

- 1998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 1,483개 사업장 53천명의 근로자에 대해 1,712억원을 채당금으로 지급.
- － 도산등사실인정이 전체 사업장의 93.1%(근로자수로는 76.5%)를 차지하며 채당금 금액은 77.2%를 차지

<표 1> 도산유형별 채당금 지급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전 체			도산등 사실인정			재판상 도산		
	사업장	인 원	금 액	사업장	인 원	금 액	사업장	인 원	금 액
전 체	1,483	53,035	171,204	1,380	40,561	132,166	103	12,474	39,037
2001	660	21,554	70,421	635	19,002	61,559	25	2,552	8,861
2000	363	14,254	45,847	346	11,189	36,719	17	3,065	9,128
1999	360	12,588	38,814	319	7,910	24,960	41	4,678	13,854
1998	100	4,639	16,122	80	2,460	8,928	20	2,179	7,194

주 : 1998년은 7.1~12.31의 자료임.  
 자료 : 근로복지공단.

<표 2> 채당금 종류별 지급실적

(단위 : 백만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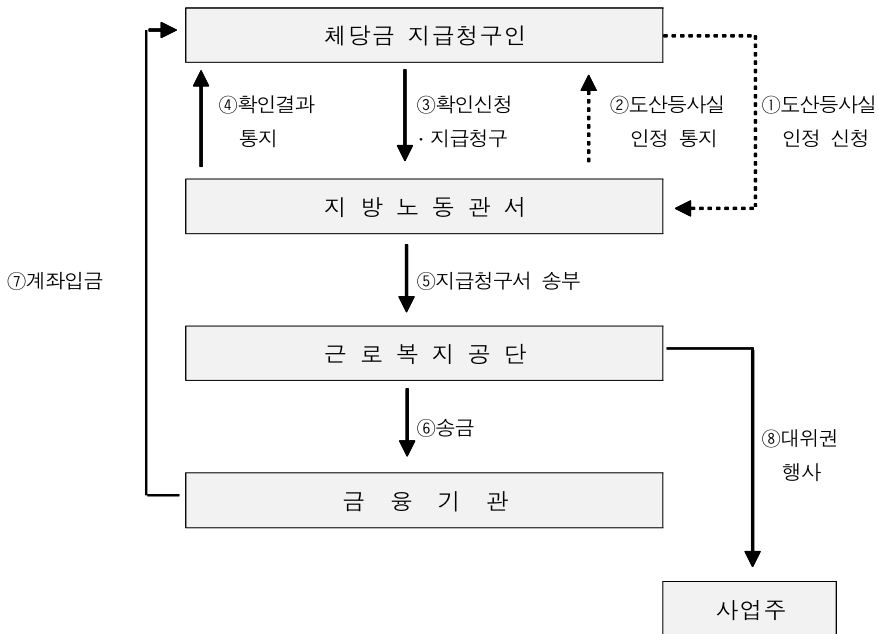
	전 체		임 금		퇴직금		휴업수당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전 체	171,204	53,035	89,925	47,017	81,155	35,720	123	169
2001	70,421	21,554	39,518	19,632	30,779	12,963	123	169
2000	45,847	14,254	23,300	12,876	22,547	9,830	-	-
1999	38,814	12,588	19,320	10,736	19,494	9,171	-	-
1998	16,122	4,639	7,787	3,773	8,335	3,756	-	-

주 · 자료 : <표 1>과 동일.

◆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제출
- 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노동관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그림 1] 체당금 지급절차



◆ 사업주 부담금 :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결정

-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 사업주부담금은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
  - 부담금비율은 1천분의 2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표 3> 연도별 부담금비율

	1998	1999	2000	2001	2002
부담금비율	2/1000	0.3/1000	0.9/1000	0.5/1000	0.5/1000

자료 : 노동부 임금정책과.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사업주임.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의 납부케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봄.
-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함.

3. 2001.7.1 및 2001.12.14일자 주요 변경내용

◆ 개정개요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고, 2001년 12월 14일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부담금비율을 결정·고시함.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의 범위확대

- 법원을 통한 도산의 인정은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사실상 근로자들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규모이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반드시 법원을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을 신속·간편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전	개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300인 이하 사업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매업·서비스업 : 50인 이하</li> <li>- 도매업 : 100인 이하</li> <li>- 건설업·운송업 : 200인 이하</li> <li>- 기타업종 : 300인 이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구분없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로 확대</li> </ul>

◆ **체당금 월정상한액의 상향조정**

- 1998년 7월 제도의 시행 이래 2001년 6월까지 경제여건 변동 및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의 상한액은 상향조정되지 않았음.
  - 실질적인 임금채권 보장수준이 실질적으로 저하되고, 체불퇴직자의 생계보호도 미흡
- 연령기준을 재조정하고 연령별 월정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1인당 최고 1,020만원 (종전 720만원)까지 지급

	개 정 전				개 정 후			
	30세미만	30~45세	45세이상		30세미만	30~40세	40~50세	45세이상
임금·퇴직금	80	100	120	임금·퇴직금	70	155	120	145
휴업수당	56	70	84	휴업수당	70	155	120	100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경감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5인 이상 사업주와 동일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따라서 5인미만 사업주는 부담금 경감기준에 따라 부담금의 50%를 납부

◆ 퇴직보험 등의 가입에 따른 부담금 경감

-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등에 가입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보장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되는 비율”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경감기준을 결정하되, 최대 경감률은 50%